

제3021호
2023. 9. 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주재봉
전화 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고 시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- 고 시
제2023-48호 :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고시 7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48호

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고시

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2조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가격표시 의무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지정목적 : 해당 구역내 소매점포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함
2. 지정내용
 - 지정대상 :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지역
 - 소재지
 -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~을지로82~삼일대로299~퇴계로97 일대(면적 0.42km²)
 - 지정범위 : 해당지역 내 모든 소매점포(도·소매 병행업소 포함)
3. 시행일 : 이 고시는 2023. 10. 1일부터 시행한다.
* 유예기간 : 2023. 9. 1. ~ 9. 30.(1개월)
4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(☎3396-50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가격표시 의무지역 대상지역(명동) 현황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